

#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## - 총 62개 국가 · 지역 -

2023.6.13.(화) 11:00 외교부

국가·지역별 가나다순

- \*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 
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**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**, 해당 정부 공식 **홈페이지**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\* 2022.7.1.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, 리히텐슈타인, 스위스,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디지털증명서(EU DCC)와 동등하게 취급

### ① 입국금지 조치 : 12개(11\*) 국가 · 지역

\*12개국 중 11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

| 구 분 | 조 치 사 항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|--|
| 유럽  | 투르크<br>메니스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외교 · 공무 · 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</li><li>- 관광비자는 발급 제한</li><li>▶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항체 결과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입국 시 공항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실시</li></ul> |

◇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: 11개 국가 · 지역

| 구 분             | 조 치 사 항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|------|---|-----|---|-----|--|
| 나우루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li>- 항공기 탑승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</li> <li>-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자(<a href="mailto:rajeevnauruimmigration@gmail.com">rajeevnauruimmigration@gmail.com</a>)에게 메일로 입국 사전 허가 취득 (입국 사유 및 왕복 항공권 송부)</li> <li>- 나우루 도착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</li> <li>- RAT 검사에서 양성 확진될 경우 13일간 정부 격리시설 수용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 솔로몬제도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전 입국 허가 폐지(22.10.12)</li> <li>○ 모든 외국인의 경우(12세 이하 청소년 제외) 솔로몬제도 입국 4주전 백신 접종 완료해야 하며, 솔로몬제도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세미만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는 입국 72시간전 PCR Test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함</li> </ul> </li> <li>○ 권장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</li> <li>- N95마스크 항상 사용 필수</li> <li>- 대규모 행사 참석시 코로나19 검사(PCR 또는 자가진단 키트 검사)권장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 마셜제도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 아시아<br>·<br>태평양 |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마이크로<br/>네시아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li>- 코로나19 건강 확인서(Health Clearance Declaration) 양식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>키리바시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>투발루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(1차 추가접종(부스터샷) 포함)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>팔라우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(다만, 아래 조건 충족 필요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</li> <li>※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(WHO, FDA 승인 제품) 음성 결과 /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</li> <li>※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,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(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/table> | 마이크로<br>네시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li>- 코로나19 건강 확인서(Health Clearance Declaration) 양식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| 키리바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| 투발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(1차 추가접종(부스터샷) 포함)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| 팔라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(다만, 아래 조건 충족 필요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</li> <li>※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(WHO, FDA 승인 제품) 음성 결과 /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</li> <li>※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,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(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|
| 마이크로<br>네시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li>- 코로나19 건강 확인서(Health Clearance Declaration) 양식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 키리바시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 투발루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(1차 추가접종(부스터샷) 포함)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| 팔라우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(다만, 아래 조건 충족 필요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</li> <li>※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(WHO, FDA 승인 제품) 음성 결과 /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</li> <li>※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,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(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  |             |   |      |   |     |   |     |  |

| 구 분  |        | 조 치 사 항   |
|------|--------|---|
| 미주   | 수리남    | <p>※ 2022.6.20.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접종자) 예외적으로 ①내국인(거주자) ②외교관 ③중증 환자의 경우 수리남 외교부(conza@gov.sr)에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황열병 국가 경유(출발)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(도착 10일 이전에 발급)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▶ (백신접종완료자*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'코로나 감염 후 회복(6개월 이내) 증명서' 제출,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, 최소 30일 보장 여행자(코로나)보험</li> <li>- 황열병 국가 경유(출발)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(도착 10일 이전에 발급) 제출</li> </ul> </li> <li>* 백신접종완료자: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(교차접종 불인정) 접종자,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,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예외</li> </ul>                |
| 유럽   | 아제르바이잔 | <p>※ 아제르바이잔 일부 지역(아르메니아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23.5.1.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,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국 가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(18세 이상에 한함)</li> <li>△내각의 특별승인(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국민은 2021.10.15.부터 내각의 특별승인 없이 항공 입국 가능하며, 바쿠 공항에서 e-Visa 신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단, △근로허가(work permit), △거주허가(residence permit)보유자 △가족 구성원 및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내각의 특별승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</li> </ul> |
| 아프리카 | 나이지리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23.1.24.부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의무 제시</li> <li>▶ 백신접종 여부 불문, 사전/사후 PCR 검사 전면 유예</li> <li>▶ 입국허가와 QR 코드 제출은 불요하나, 주재국 포털 사이트에 건강상태 사전등록(<a href="https://nitp.ncdc.gov.ng">https://nitp.ncdc.gov.ng</a>) 권장 / 출발 前, 기내,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</li> </ul>  |
| 중동   | 이라크    | <p>이라크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/코로나19 백신증명서 지참 권고(입국시, 백신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)</li> <li>※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인바,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지참 필수</li> <li>▶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쿠르드 지역 입국제한 조치 강화(23.1.15부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</li> </ul> </li> </ul>   |

## ② (시설)격리 조치 : 해당 국가 없음

## 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: 50개 국가·지역

| 구 분     | 조 치 사 항   |
|---------|---|
| 네파爾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2.3.1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*를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시설(자가)격리 불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(교차 접종 인정) / 백신 종류와 회차별 접종일자 기재(부스터샷 접종 불요)</li> </ul> </li> <li>※ 단,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</li> <li>▶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미소지의 경우 출발 72시간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비자 발급, 시설(자가)격리 불요</li> <li>※ 5세 이하 PCR 검사 면제</li> </ul>  |
| 뉴질랜드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국 전 NZeTA(전자여행허가) 신청</li> <li>※ (6.22.~)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</li> <li>※ (9.13.~)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</li> <li>※ (주재국 권고사항) 입국 시 공항에서 제공받은 RAT 키트로 도착 0/1일차 및 5/6일차에 검사 실시하고, 주재국 보건부에 결과 통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실시 필수</li> </ul> </li> <li>※ (뉴질랜드 환승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승비자 또는 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,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대기 가능(24시간 초과 시 별도 입국비자 필요)</li> <li>- (6.21.~) 환승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및 NZTD 등록은 폐지됨.</li> <li>-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(예: 승인(Confirmed) 상태의 환승비자 등)가 없는 경우 뉴질랜드 경유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▶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,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</li> </ul>   |
| 아시아·태평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22.6.27.~) 니우에-뉴질랜드 간 무격리 트래블버블 시행 중이며, 해외 방문객 입국은 뉴질랜드 경유를 통해서만 가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뉴질랜드 및 니우에 두 국가의 입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니우에 입국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※ 30일 미만 체류 시 별도 비자 불요 단, 뉴질랜드 경유 시 환승용 NZeTA 발급 필수</li> <li>(입국요건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전면 폐지(23.3.30.~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후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, 숙소에서 5일 자가격리 의무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※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(23.3.30.~)</li> <li>※ 입국 전 니우에 여행자 신고서(Niue Travellers Declaration Form*) 신청 불요(23.4.3.~)</li> <li>※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진 판정일로부터 5일간 입국 제한(23.3.30.~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(입국 시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국 후 1일차와 3일차에 Niue Fono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장(23.3.30.~)</li> </ul> </li> </ul> |

| 구 분  | 조 치 사 항   |
|------|---|
| 대만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2.9.29.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 허용</li> <li>▶ <b>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(23.2.7.부터 부터 적용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·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</li> <li>- 자가 또는 친·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(욕실 겸비 필수)이 원칙</li> <li>- (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)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, 방역차량, 친인척 차량, 자차 모두 이용 가능</li> <li>- (자발적건강관리기간)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동티모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정기 민항편 운영 중지, 비정기 민항기만 운항(21.5.7.)</li> <li>※ 외국인 입국 가능(도착비자 제한 없음)</li> <li>※ <b>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면제 (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)</b></li> <li>※ 백신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</li> <li>※ 백신 미접종자 중 접종 불가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, 의사가 발행한 사유서 제출 필요</li> <li>※ <b>입국전 사전 검역신고서 작성 및 QR코드 발급</b><br/>(<a href="https://adencare.online/PointOfEntry/Register">https://adencare.online/PointOfEntry/Register</a>)</li> </ul>   |
| 몰디브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(22.3.14)</b></li> <li>※ 모든 입-출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불문, 몰디브 보건부 온라인 시스템(IMUGA)을 통해 건강진단서를 입-출국 72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몰디브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이 불필요</li> <li>※ 단,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, 코로나19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.</li> <li>※ 여행관련 격리 불요</li> </ul>  |
| 미얀마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방역조치(22.10.8.~)</li> <li>※ 입국 시 구비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(백신접종완료자)</b> 백신접종증명서(입국 전 14일 경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백신종류 : 기존 WHO 긴급승인 백신 10개 종 + 노바백스 누백소비드 (Nuvaxovid)</li> <li>* 만 12세미만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</li> </ul> </li> <li>- <b>(백신접종미완료자)</b> PCR 음성 확인서(48시간 내)</li> <li>- <b>(공통 구비 서류)</b> 미얀마 국영보험 또는 여타 코로나19 관련 보상이 포함된 보험 가입증서(영문)</li> </ul> </li> <li>※ 미얀마 국영보험 : (<a href="http://www.mminsurance.gov.mm">www.mminsurance.gov.mm</a> -&gt; General Insurance-&gt;Inbound Travel Accident Insurance)에서 가입 가능</li> <li>※ 여타 보험 : 주한미얀마대사관 문의를 통해 인정여부 확인 가능<br/>(전화 : 02-790-3814~6, 이메일 : seoul-embassy@mofa.gov.mm)</li> </ul> |

| 구 분 | 조 치 사 항   |
|-----|---|
| 부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</li> <li>- 입국시 Covid19 관련 RT-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, 입국장 등에서 무작위로 PR-PCR 테스트가 실시 될 수 있음</li> </ul>   |
| 인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.11.15.부터 외국인의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방문 가능</li> <li>- 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.3.15.부 효력 재개<br/>※ 전자비자(e-visa)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</li> <li>▶ 공항으로 입국하는 2%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(22.12.24.부)</li> <li>- 양성 확인시 자가 격리 조치</li> <li>▶ (주재국 권고사항) 공항 도착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</li> </ul>   |
| 중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3.4.29.부 모든 중국행 탑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 항원 자가진단으로 PCR검사 대체 가능</li> <li>- (입국 전 검사)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항원 자가진단키트 검사 또는 PCR검사 실시 / 검사 결과 양성 시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</li> <li>- (세관 신고) 상기 음성 결과를 받은 후 세관 APP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신고서 작성<br/>※ 건강신고서 링크(<a href="https://htdecl.chinaport.gov.cn/htdeclweb/home/pages/healthDeclare/declare.html">https://htdecl.chinaport.gov.cn/htdeclweb/home/pages/healthDeclare/declare.html</a>)</li> <li>- (항공사 음성결과 확인) 탑승객 대상 탑승 전 PCR검사 및 항원 자가진단 결과 확인불요</li> <li>- (입국 검역) ① 중국 도착 후 세관 건강신고 QR코드 제시 ② 中 세관은 일정 비율 승객에 대한 선별 코로나19 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강신고 이상 혹은 빌열 등 유증상 탑승객 대상 세관의 역학조사, 의학 검사 등 진행</li> </ul> </li> <li>▶ 23.2.6.부 중국-홍콩 / 마카오 간 인적왕래 회복조치 등에 따라 동 지역 간 이동이 아래와 같이 간소화</li> <li>- (중국 → 홍콩 / 마카오)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요</li> <li>- (홍콩 / 마카오 → 중국) 중국 건강신고서 작성 외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불요하나 아래 경우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) (홍콩) 중국 입국 전 7일 내 해외(중국, 마카오 외)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필요</li> <li>· 2) (마카오) 해외(중국, 홍콩 외)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, ① 마카오 입경 익일을 1일로 기산하여 7일 이내 중국 이동 시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필요 ② 마카오 입경 익일을 1일로 기산하여 7일 이후 중국 이동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중국 이민관리국, 23.5.15.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중국 공항만(홍콩, 마카오 포함) 신속통관(자동 출입국 심사) 전면 재개</li> </ul> <p>※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</p> <p>※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.</p> |

| 구 분  | 조 치 사 항  |
|------|--|
| 파키스탄 | <p>▶ 2022.9.1.부터 입국시 항공편 탑승전 Pass Track 앱내 개인정보 입력 잠정중단<br/>     ※ 단, 입국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혹은 (12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경우) 항공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</p>  |
| 필리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백신접종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자(15세 이상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 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</li> </ul> </li> <li>○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,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, WHO ICV(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출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백신미접종자, 접종 미완료자, 접종완료 증빙이 불가한 경우(15세 이상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국 48시간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negative laboratory-based rapid Antigen Test) 제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 불가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시행</li> <li>* 양성 판정시 필리핀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15세 미만자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여행을 동반하는 성인(부모 등)과 동일한 수칙을 따름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필리핀인 배우자,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eTravel 등록(기존 One Health Pass 대체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리핀 입국자의 출발전 입국 정보,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eTravel (<a href="https://etravel.gov.ph">https://etravel.gov.ph</a>) 등록 필요</li> </ul> </li> <li><b>※ 필리핀 일부 지역(잠보양가 등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</b></li> </ul> |
| 미주   | <p>▶ 2022.6.16.부터 니카라과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RT-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되,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(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)를 제시해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종 완료 : 백신 2회 접종(동일백신 또는 혼합백신)한 경우. 단, Sputnik Light와 J&amp;J/Janssen 백신의 경우는 1회 접종한 경우</li> <li>○ 인정 백신 : WHO 승인 백신 및 니카라과에 등록된 백신 (Pfizer, Moderna, AstraZeneca, Covishield, Janssen, Sinopharm, Soberana02, Abdala, Sputnik V, Sputnik Light, Coviran)</li> <li>○ 접종 연도 : 상관 없음</li> <li>○ 입국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(종이 등 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) 제시</li> <li>○ 육상, 해상, 항공 등 니카라과 국경에서 공통 적용되며, 승객 및 승무원 모두 해당</li> </ul> <p>▶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RT-PCR 테스트 음성결과서를 입국시 제시해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및 성인,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모두 PCR 음성결과서 제시 필요</li> <li>※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‘RT-PCR’ 또는 ‘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’ 표기 필요</li> <li>※ 아시아, 오세아니아, 아프리카 출발자는 입국 96시간 내 시행한 음성결과서 계속 인정</li> <li>※ 항공권 구매 여행사 및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및 입국 관련 상세 안내문 사전 확인 필요</li> </ul>  |

| 구 분         | 조 치 사 항   |
|-------------|---|
| 도미니카<br>공화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(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)           <br/>※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</li> </ul>   |
| 멕시코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         <br/>※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, △경증시 자가격리, △중증시 입원조치</li> <li>▶ 멕시코-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</li> </ul>  |
| 베네수엘라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23.1.1.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백신접종증명서(접종완료)</u>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이, 디지털(QR코드) 또는 다른 유효한 형태</li> <li>- 입국일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접종 완료</li> <li>- 접종완료 후 270일이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(부스터샷)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<u>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</u> 도착 72시간 이전에 발급된 PCR-RT 음성확인서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볼리비아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022.4.27.부터</b> 아래 입국절차 적용</li> <li>○ <u>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(2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)</li> <li>○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(영문 또는 스페인어) 지참</li> <li>2.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(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)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(영문 또는 스페인어) 결과서 지참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공 입국의 경우,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</li> <li>- 육로, 선박 입국의 경우,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또는</li> </ul> </li> <li>② 입국 시 코로나19 항원(Antigen) 음성(영문 또는 스페인어) 결과서 지참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공 입국의 경우, 항공편 출발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</li> <li>- 육로, 선박 입국의 경우, 볼리비아 도착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li>3. 기존에 시행되었던 자가격리 의무 및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보장 여행자 보험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</li> </ol> </li> </ul>   |
| 브라질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(20.7.29.), 육상(21.12.9.), 해상(2022.4.1.)을 통한 입국 허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 서비스기관에 제시</li> </ul> </li> <li>1.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브라질 위생감시청(ANVISA),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 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(얀센 1회, 그 외 백신 2회) 후 14일 경과해야 함.</li> <li>* 브라질 보건당국은 얀센 1회 및 그 외 백신 2회 접종을 <u>1차 접종 계획(esquema vacinal primario)</u>이라고 언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 접종 계획에 대한 정의 및 해석 여지를 고려하여 언론 등을 통해 상기 내용 전파</li> <li>- 참고로 부스터샷, 2가 백신 등이 2차 접종계획(dose de reforço)에 포함</li> <li>-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, 백신명 또는 제조사, 로트번호, 접종 일자 포함 필요</li> <li>- 인쇄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시,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2. 음성확인서 요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</li> <li>-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, 탑승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서만 유효</li> </ul> </li> <li>3.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12세 미만 이동, 화물운송 근로자, 항공 승무원</li> <li>-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</li> <li>- 사전 입국 승인없이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(예 : 난민 등)</li> <li>-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</li> </ul> </li> <li>4. 기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한 RT-PCR 양성 확인서(두 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)와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일자가</li> </ul> </li> </ul> |

| 구 분       | 조 치 사 항   |
|-----------|---|
|           | <p>포함된 의사소견서(의사 서명 필요)를 예방접종증명서/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.</li> </ul> <p>※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영어본 중 제시</p>  |
| 세인트 루시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9.5.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전면 해제<br/>(▲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, ▲백신 접종 불요)</li> <li>- 단, 입국 전 작성한 건강확인서(Health Screening Form)*는 제시 필요<br/>* 정부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stlucia.org/en/covid-19/">stlucia.org/en/covid-19/</a>)에서 다운받아 작성</li> </ul>  |
| 세인트 키츠네비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5.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전면 해제<br/>(▲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, ▲백신 접종 불요)</li> <li>- 단, 입국 전 온라인 입국 신고서* 작성 필요<br/>* <a href="http://knatravelform.kn">knatravelform.kn</a>에서 작성</li> </ul>  |
| 아르헨티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.11.1.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</li> </ul> <p>※ 한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,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고</li> </ul> <p>※ (비영주 외국인 입국 시 준수 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(격리, 입원 등)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</li> <li>-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</li> </ul> <p>※ 22.4.7.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진단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</p> <p>※ 22.8.26.부터 입국 전 입국서약서 제출 규정 폐지</p>   |
| 아이티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.2.9.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</li> </ul> <p>※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</p>  |
| 온두라스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prechequeo.inm.gob.hn">https://prechequeo.inm.gob.hn</a>) 통해 입국 신청 필요(통상 입국 1-2일 전부터 신청 가능)</li> </ul> <p>※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/신속항원검사) 또는 백신접종증명서(백신 종류 불문, 필수 접종횟수 모두 완료) 제출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순 경유시에도 제출 필요</li> </ul> <p>※ 황열병 감염 위험 국가에서 출발(경유지 포함)하여 온두라스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(예방접종 유효기간 10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미카리브 : 파나마, 트리니다드토바고</li> <li>- 남미 :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브라질, 콜롬비아, 에콰도르, 프랑스령 기아나, 가이아나, 페루, 수리남, 베네수엘라, 파라과이</li> <li>- 아프리카 : 앙골라, 베냉, 부르키나파소, 부룬디, 카메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콩고, 적도기니, 에티오피아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가봉, 감비아, 가나, 라이베리아, 말리, 모리타니, 기니, 기니비사우, 케냐, 나이지리아, 시에라리온, 세네갈, 소말리아, 수단, 남수단공화국, 탄자니아, 우간다, 니제르, 르완다, 상투메프린시페, 토고</li> </ul> |
| 우루과이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3.3.1.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(여행자보험 등) 소지 필요</li> <li>2)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</li> </ol>   |
| 파라과이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만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* 증명을 제출해야 함. 동 증명서는 스페인어, 영어, 프랑스어, 포르투갈어에 한해 인정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</li> </ul> <p>*접종완료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회 접종 (2회 접종, 1회 부스터샷 접종)</li> <li>- 2회 접종 (2회차 접종 완료 6개월 이내)</li> <li>- 1회 완료 백신(접종 3개월 이내)</li> </ul> <p>▶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(접종 미완료자 포함)는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-PCR, LAMP, NATT 방식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</p>   |

| 구 분 |       | 조 치 사 항  |
|-----|-------|--|
|     |       | <p><u>우크라이나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.6.7.부터 △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, △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, △WHO 인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허용</li> <li>※ 동 의무 면제 대상 : 12세 미만 어린이, 영주권자, 駐우크라이나 외교관/기족, 정부 대표단, 난민 등</li> <li>▶ 21.8.5.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/미완료 외국인(영주권자 포함)은 입국 후 72시간 이후 10일 자가격리 시행</li> <li>※ 백신 미접종/미완료 외국인은 “브도마(Vdoma 또는 В д о м а)”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해야 입국 가능</li> <li>※ 입국 후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, 동 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</li> <li>※ 동 자가격리 면제 대상 : 18세 미만 미성년자, 정부대표단, 駐우크라이나 외교관/기족 등</li> <li>※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러시아에서 체류하거나 러시아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/미완료 외국인들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(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불가능)</li> <li>▶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(격리비용 포함)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</li> <li>※ 동 의무면제대상 : 영주권자, 駐우크라이나 외교관/기족, 정부대표단, 난민 등</li> <li>▶ 21.12.3.부터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니마비아, 레소토, 에스비티니, 모잠비크, 말리위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(경유 허용)</li> <li>※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 : 임시거주증 소지자, 영주권자,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/기족 등</li> <li>-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</li> </ul> |
| 중동  | 리비아   | <p><u>리비아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</li> <li>※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인바,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지침 필수</li> </ul>   |
|     | 모리타니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.9.10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</li> <li>※ 기존의 입국 요건(비자 발급 등)에 더해 입국 시 △입국 전 3일 이내(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)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(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), △체온 측정, △건강자가진단서 제출</li> <li>※ 공항 도착 시 유증상(발열)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</li> </ul> </li> <li>※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(영국, 남아공, 브리질, 인도 등)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,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(비용 자부담),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,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</li> <li>※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</li> </ul>   |
|     | 알제리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2.3.20.부터 백신접종증명서* 제출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</li> <li>*WHO 긴급승인 백신(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 화이자, 얀센, 시노백, 노바백스, 시노팜(베이징), 코비쉴드, 코백신)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9개월 이내 접종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</li> <li>※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</li> </ul>  |
|     | 이란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(2회) 제출(13세 이상) 또는 PCR 음성확인서 (출발 72시간 이내 실시) 지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백신 접종 완료(fully vaccinated) 후 최소 14일 경과(백신 종류 무관)</li> </ul> </li> <li>※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, 격리 실시 (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)</li> <li>※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</li> <li>※ 디지털 접종증명서에는 QR코드 포함 필요</li> <li>※ 2021.10.27.부터 관광비자 발급 재개(단, 여행사를 통한 발급 권장)</li> </ul>   |

| 구 분        | 조 치 사 항  |      |  |
|------------|--|------|--|
| 팔레스타인      | <p>이스라엘 입국절차와 동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백신접종여부 무관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</li> <li>※ COVID-19를 포함하고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증서 필수 제출</li> </ul>  |      |  |
| 남수단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</li> <li>※ 단,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,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(관광, 친지 방문 등)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</li> </ul>  |      |  |
| 니제르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(20.8.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(검체채취일 기준)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UEMOA 가입국발 승객들에 한해, 5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허용</li> <li>- 유증상자는 신속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PCR 검사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※ 니제르 거주자는 7일간 자가격리 실시(21.8.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, △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, △격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격리 종료</li> </ul> </li> <li>※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7일 이상 체류 시 7일째 정부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 |  |
| 모리셔스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22.7.1.부터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</li> <li>▷ 출발 전 입국정보와 건강상태 입력 및 QR 코드 수령하여 입국 시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<a href="https://safemauritius.govmu.org">https://safemauritius.govmu.org</a>)</li> </ul> </li> </ul>   |      |  |
| 아프리카       | <td>민주콩고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.8.15.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</li> <li>※ 입출국시 △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, △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, 검역문진표 작성</li> <li>※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추가 PCR 음성확인서 전면폐지, 미접종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 실시</li> </ul> </td>  | 민주콩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.8.15.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</li> <li>※ 입출국시 △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, △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, 검역문진표 작성</li> <li>※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추가 PCR 음성확인서 전면폐지, 미접종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 실시</li> </ul> |
| 보츠와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19 관련 입국허가 요건 (22.3.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접종완료자)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,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,</li> <li>※ (접종미완료자)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, 입국 시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</li> <li>※ 코로나 양성 판정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14일간의 격리 필요</li> </ul> </li> <li>*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(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 얀센 등)의 완전한 접종(화이자/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, 얀센 1차 접종 완료) 및 부스터샷 접종 불필요</li> </ul>   |      |  |
| 부르키나<br>파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(20.8.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△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, 입국일로부터 8일째,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, △코로나19 유증상자(체온 38도 이상)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(90,000CFA비용 자부담)</li> <li>※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|  |

| 구 분               | 조 치 사 항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상투메<br>프린시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0.7.16.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(항공 및 선박) 허가</li> <li>※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,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</li> </ul>  |
| 세이셸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2.12.1부터 코로나19 관련 입국요건 해제</li> <li>※ 단, 입국 시 세이셸 여행허가증(Travel Authorization) 온라인 신청(<a href="http://seychells.govtas.com">seychells.govtas.com</a>) 후 입국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 시 △항공권 예약 확인증, △숙박 예약 확인증, △건강보험 등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시에라리온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입국 전) 출발 전 시에라리온 여행 포털(<a href="http://www.travel.gov.sl">www.travel.gov.sl</a>) 에 입국정보 등록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에라리온 여행포털(<a href="http://www.travel.gov.sl">www.travel.gov.sl</a>)에서 입국정보 입력 후 여행허가서류 (Traveler 's Authorization) 홈페이지에서 발급</li> </ul> </li> <li>*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전, 도착 후 PCR 검사 불필요(1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출발 14일전 접종 권장)</li> <li>▶ (입국 후) 백신 미접종자, 부분 접종자에 한해 도착 후 공항 내 PCR 검사 필수</li> </ul>  |
| 앙골라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앙골라 입국시,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(영문/포르투갈어)를 제출하거나 항공편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RT-PCR검사결과(음성확인서) 제출 의무</li> <li>▶ 앙골라 출국시,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증명서(영문/포르투갈어) 제출 의무</li> </ul> <p>※ 12세 미만은 입출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, RT-PCR 검사 결과 제출 대상에서 제외</p>   |
| 에리트레아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승객은 입국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</li> <li>※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에 대한 PCR 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중앙<br>아프리카<br>공화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3일(72시간)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영문) 제출</li> <li>※ 입국 시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체온 검사, 개인소지품 소독,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</li> </ul>  |
| 지부티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2.9.15부터 출입국 관리 조치 변경(대통령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지부터 입국 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소지자 :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됨.</li> <li>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미소지자 : 출발일 기준 3일(72시간)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PCR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, 지부터 공항 내 검사소에서 PCR 검사 필요 (검사비 : 30 USD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(지부터 출국 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소지자 : 출국 가능</li> <li>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미소지자 : 행선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입국 규정에 따라 △PCR 음성확인서 요구 시,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, △요구사항이 없을 시,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출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|
| 차드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도착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영문) 제출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, 마스크 착용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기 서류 미제출시 벌금(40,000세파누 약70USD)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  |

| 구 분    | 조 치 사 항  |
|--------|--|
| 카메룬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육로를 통한 입국 불가(야운데, 두알라 공항을 통한 입국 가능)</li> <li>※ 카메룬 입국 관련 코로나19 제한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카메룬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할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불요. 단,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도착기준 3일(72시간)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(22.10.4부터)</li> <li>- 야운데-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,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 시설 격리(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, 격리 비용 자부담)</li> </ul> </li> <li>※ (카메룬 출국시 조치) 출국자의 최종도착지 요구서류(PCR음성결과지 등) 카메룬 공항에서 제시필요(22.4.7부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카메룬 내 PCR 1회 비용 : 30,000XAF(약 50USD)</li> </ul> </li> <li>※ 카메룬 입국시 시증 필요(코로나19 상황下 도착 시증 발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)</li> </ul>  |
| 케냐     | <p>▶ 20.8.1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케냐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 및 여행객은 별도로 격리는 없으나, 케냐 입국 단계에서 코로나19 ‘백신접종증명서’ 또는 출발 72시간 이내 시행한 ‘PCR 음성확인서’ 중 하나를 필히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백신은 접종 필요 횟수(2회, 얀센은 1회)를 모두 맞아야 하며, 2차 접종일(얀센은 1차 접종일)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 케냐에 도착해야 함.</li> <li>- 백신접종증명서는 <a href="http://www.globalhaven.org">www.globalhaven.org</a> 사이트에 업로드(Begin Validation →Sign in→Upload Vaccine record→Report Vaccination 메뉴 이용)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</li> <li>- PCR 음성확인서는 <a href="http://www.globalhaven.org">www.globalhaven.org</a> 사이트에 업로드(Begin Validation →Sign in→Validate Test for Travel 메뉴 이용 / 한국에서 진행한 PCR 검사는 at any other lab에 해당)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</li> </ul> </li> <li>※ 만 12세 미만 여행객은 제출 의무 면제</li> <li>※ 모든 여행객 중에서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ers.health.go.ke/airline_registration">https://ers.health.go.ke/airline_registration</a>)에 접속, Register for a new travel을 작성한 후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(핸드폰 저장 사진 또는 출력물)하고, 신속항원검사를 자비(미화 30불)로 받아야하며, 양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 및 추가비용(미화 50불) 지불하고 추가 PCR 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</li> <li>※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-visa만 가능(21.1.1.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a href="http://www.evisa.go.ke">www.evisa.go.ke</a>를 통해 발급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|
| 코모로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불요. 단, 입국 시 <b>백신접종증명서</b> 소지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, 72시간 안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</li> <li>* 백신접종 완료자: 2차 접종 완료자, 얀센 등 1회만 요구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인정)</li> <li>*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</li> </ul> </li> <li>▷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격리 없음</li> </ul>   |
| 콩고 공화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(육로 및 해로를 통한 국경 통과 금지)</li> <li>▶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</li> <li>※ Health and Immigration declaration Form 작성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  |

| 구 분 | 조 치 사 항   |
|-----|---|
| 토고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-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(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(<a href="https://voyage.gouv.tg/checkphone">https://voyage.gouv.tg/checkphone</a>) 작성 (로메콩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-19 PCR 검사 신청,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) 완료 필요</li> <li>※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-19 PCR 검사 의무 실시,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(30일간)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(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)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</li> <li>※ 21.11.29.부터 남아공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</li> </ul> </li> <li>▶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입국)입국전 5일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, △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(<a href="http://www.voyage.gouv.tg">http://www.voyage.gouv.tg</a>)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재, △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, △코로나 검사 실시,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</li> <li>※ (출국) 출국전 5일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</li> </ul> </li> <li>▶ 5월 17일부로 육·해상 국경 개방</li> <li>▶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</li> </ul> |

\* 사증 발급 중단, 자가격리(권고 포함), 도착 시 발열검사·검역 신고서 징구 등

- \* EU 회원국(27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몰타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크로아티아 (밑줄 국가는 非솅겐협약 가입국)
- \* 섹겐협약 가입국(27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벨기에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크로아티아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(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)

## 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: 129개 국가 · 지역

\*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| 구 분       | 조치 해제 국가·지역(해제 시기)   |
|-----------|--|
| 미주(20)    | 코스타리카 <sup>⑨</sup> , 자메이카 <sup>②</sup> , 쿠바 <sup>⑩</sup> , 그레나다 <sup>⑩</sup> , 트리니다드투바고 <sup>⑯</sup> , 과테말라 <sup>⑦</sup> , 파나마 <sup>⑯</sup> , 캐나다 <sup>⑯</sup> , 가이아나 <sup>⑩</sup> , 에콰도르 <sup>⑦</sup> 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<sup>⑦</sup> , 바베이도스 <sup>⑦</sup> , 페루 <sup>⑮</sup> , 앤티가바부디 <sup>⑩</sup> , 엘살바도르 <sup>⑯</sup> , 벨리즈 <sup>⑪</sup> , 칠레 <sup>⑩</sup> , 미국 <sup>⑪</sup> , 바하마 <sup>⑫</sup> , 콜롬비아 <sup>⑩</sup>   |
| 중동(12)    | 바레인 <sup>①</sup> , 요르단 <sup>②</sup> , 사우디아라비아 <sup>③</sup> , 쿠웨이트 <sup>⑩</sup> , 오만 <sup>⑩</sup> , 이집트 <sup>④</sup> , 레바논 <sup>⑯</sup> , 모로코 <sup>⑯</sup> , 아랍에미리트 <sup>⑯</sup> , 튜니지 <sup>⑩</sup> , 카타르 <sup>⑩</sup> , 이스라엘 <sup>⑩</sup>  |
| 유럽(48)    | 노르웨이 <sup>④</sup> , 슬로베니아 <sup>⑤</sup> , 아이슬란드 <sup>⑥</sup> , 헝가리 <sup>⑦</sup> , 아일랜드 <sup>⑧</sup> , 루마니아 <sup>⑨</sup> , 영국 <sup>⑩</sup> , 폴란드 <sup>⑯</sup> , 스웨덴 <sup>⑯</sup> , 덴마크 <sup>⑯</sup> , 라트비아 <sup>⑯</sup> , 스위스 <sup>⑦</sup> , 슬로바키아 <sup>⑩</sup> , 몬테네그로 <sup>⑯</sup> , 체코 <sup>⑯</sup> , 불가리아 <sup>⑩</sup> , 키르기스스탄 <sup>⑯</sup> , 그리스 <sup>⑯</sup> , 크로아티아 <sup>⑩</sup> , 아르메니아 <sup>⑩</sup> , 알바니아 <sup>⑩</sup> , 세르비아 <sup>⑩</sup> , 벨기에 <sup>⑩</sup> , 사이프러스 <sup>⑩</sup> 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<sup>⑩</sup> , 벨라루스 <sup>⑩</sup> , 이탈리아 <sup>⑦</sup> , 독일 <sup>⑩</sup> , 튜르키예 <sup>⑩</sup> , 카자흐스탄 <sup>⑩</sup> , 우즈베키스탄 <sup>⑩</sup> , 에스토니아 <sup>⑩</sup> , 조지아 <sup>⑩</sup> , 핀란드 <sup>⑩</sup> , 포르투갈 <sup>⑩</sup> , 프랑스 <sup>⑩</sup> , 네덜란드 <sup>⑩</sup> , 룩셈부르크 <sup>⑩</sup> , 러시아 <sup>⑩</sup> , 스페인 <sup>⑩</sup> , 몰타 <sup>⑩</sup> , 몰도바 <sup>⑩</sup> , 북마케도니아 <sup>⑩</sup> , 모나코 <sup>⑩</sup> , 리투아니아 <sup>⑩</sup> , 리히텐슈타인 <sup>⑩</sup> , 타지키스탄 <sup>⑩</sup> , 오스트리아 <sup>⑩</sup> |
| 아 · 태(22) | 몽골 <sup>⑪</sup> , 호주 <sup>⑩</sup> , 말레이시아 <sup>⑩</sup> , 브루나이 <sup>⑩</sup> , 쿠 제도 <sup>⑩</sup> , 사모아 <sup>⑩</sup> , 태국 <sup>⑩</sup> , 바누아투 <sup>⑩</sup> , 파푸아뉴기니 <sup>⑩</sup> , 캄보디아 <sup>⑩</sup> , 라오스 <sup>⑩</sup> , 스리랑카 <sup>⑩</sup> , 베트남 <sup>⑩</sup> , 아프가니스탄 <sup>⑩</sup> , 싱가포르 <sup>⑩</sup> , 피지 <sup>⑩</sup> , 홍콩 <sup>⑩</sup> , 마카오 <sup>⑩</sup> , 통가 <sup>⑩</sup> , 일본 <sup>⑩</sup> , 방글라데시 <sup>⑩</sup> , 인도네시아 <sup>⑩</sup>   |
| 아프리카(27)  | 가봉 <sup>⑯</sup> , 남아공 <sup>⑩</sup> , 베냉 <sup>⑩</sup> , 르완다 <sup>⑩</sup> , 수단 <sup>⑩</sup> , 마다가스카르 <sup>⑩</sup> , 나미비아 <sup>⑩</sup> , 카보베르데 <sup>⑩</sup> , 에스와티니 <sup>⑩</sup> , 세네갈 <sup>⑩</sup> , 에티오피아 <sup>⑩</sup> , 김비아 <sup>⑩</sup> , 부룬디 <sup>⑩</sup> , 탄자니아 <sup>⑩</sup> , 잠비아 <sup>⑩</sup> , 적도기니 <sup>⑩</sup> , 우간다 <sup>⑩</sup> , 모잠비크 <sup>⑩</sup> , 코트디부아르 <sup>⑩</sup> , 짐바브웨 <sup>⑩</sup> , 케냐 <sup>⑩</sup> , 기니 <sup>⑩</sup> , 말리 <sup>⑩</sup> , 기니비사우 <sup>⑩</sup> , 라이베리아 <sup>⑩</sup> , 가나 <sup>⑩</sup> , 말라위 <sup>⑩</sup>   |

### ① 바레인

- ▶ 22.2.20.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

### ② 요르단

- ▶ 22.3.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,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(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)

\*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<https://www.gateway2jordan.gov.jo>

### ③ 사우디아라비아

- ▶ 22.3.5.부터 입국제한 조치(음성확인서, 입국 이후 PCR 검사 등)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폐지,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없음. (다만,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)

### ④ 노르웨이

- ▶ 22.2.12.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(사전등록, 음성확인서 제출, 입경지점 검사, 격리 의무) 모두 폐지

### ⑤ 슬로베니아

- ▶ 22.2.19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

※ 다만,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.

### ⑥ 아이슬란드

- ▶ 22.2.25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 ⑦ 헝가리

- ▶ 22.3.7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 ⑧ 아일랜드

- ▶ 22.3.7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 ⑨ 루마니아

- ▶ 22.3.7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 ⑩ 영국

- ▶ 22.3.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.

### ⑪ 몽골

- ▶ 22.3.14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# ⑫ 폴란드

- ▶ 22.3.28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# ⑬ 가봉

- ▶ 22.3.28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# ⑭ 덴마크

- ▶ 22.3.29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# ⑮ 스웨덴

- ▶ 22.4.1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# ⑯ 라트비아

- ▶ 22.4.1.(금)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

-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(고위험 국가 제외)

-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(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) 제출 필수(단, 12세 미만 어린이,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, 24시간 내 경유자,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)

#### ⑰ 스위스

- ▶ 22.4.1.부 모든행 입국제한조치 폐지

#### ⑱ 슬로바키아

- ▶ 22.4.6.부 모든행 입국제한조치 폐지

#### ⑲ 코스타리카

- ▶ 22.4.1.부 모든행 입국제한조치 폐지

#### ⑳ 몬테네그로

- ▶ 22.4.9.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

#### ㉑ 체코

- ▶ 22.4.9.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

- ▶ 23.1.31.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해제

#### ㉒ 자메이카

- ▶ 2022.4.15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㉓ 불가리아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㉔ 키르기즈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㉕ 쿠웨이트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㉖ 그리스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㉗ 크로아티아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㉘ 아르메니아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\*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(아제르바이잔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

#### ㉙ 알바니아

- 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# ㉚ 세르비아

- ▶ 2022.5.3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 ③ 쿠바

- ▶ 2022.4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### ④ 오만

- ▶ 2022.5.23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 ⑤ 벨기예

- ▶ 2022.5.24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### ⑥ 사이프러스

- 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⑦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

- ▶ 2022.5.2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⑧ 벨라루스

- ▶ 2022.5.2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\* 벨라루스 일부 지역(우크라이나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**

### ⑨ 이탈리아

- 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⑩ 그레나다

- ▶ 2022.4.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⑪ 독일

- 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단 번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

### ⑫ 튀르키예

- ▶ 2022.6.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⑬ 카자흐스탄

- ▶ 2022.6.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⑭ 우즈베키스탄

- ▶ 2022.6.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⑮ 에스토니아

- ▶ 2022.6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⑯ 이집트

- ▶ 2022.6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⑰ 조지아

- ▶ 2022.6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⑱ 트리니다드토바고

- ▶ 2022.7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⑲ 핀란드

- ▶ 2022.7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⑳ 남아공

- ▶ 2022.6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㉑ 포르투갈

- ▶ 2022.7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㉒ 호주

- ▶ 2022.7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㉓ 베냉

- ▶ 2022.7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### ㉔ 프랑스

- ▶ 2022.8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⑤₃ 르완다**

▶ 2022.7.2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⑤₄ 수단**

▶ 2022.8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⑤₅ 말레이시아**

▶ 2022.8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2.12.30.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(체온) 검사 실시,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(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)

### **⑤₆ 마ダ가스카르**

▶ 2022.8.1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⑤₇ 과테말라**

▶ 2022.8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⑤₈ 나미비아**

▶ 2022.8.2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⑤₉ 브루나이**

▶ 2022.9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₀ 파나마**

▶ 2022.9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₁ 카보베르데**

▶ 2022.9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₂ 쿠 제도**

▶ 2022.9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입국 후 코로나 확진 시 숙소에서 7일 자가격리 필수

### **⑥₃ 사모아**

▶ 2022.9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₄ 레바논**

▶ 2022.9.2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₅ 캐나다**

▶ 2022.10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₆ 모로코**

▶ 2022.10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3.1.3.부터 국적불문 중국발 모로코 입국 금지(중국에서 출국한 지 7일 경과했을 경우 모로코 입국 가능)

### **⑥₇ 태국**

▶ 2022.9.3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₈ 바누아투**

▶ 2022.9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⑥₉ 파푸아뉴기니**

▶ 2022.10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⑦₀ 네덜란드**

▶ 2022.9.1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⑦₁ 룩셈부르크**

▶ 2022.10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⑦₂ 캄보디아**

▶ 2022.10.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### **⑦₃ 가이아나**

▶ 2022.10.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3.1.8.부터 중국, 홍콩, 마카오발 모든 입국자(2세 이상)는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(또는 항원검사)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

\* 출발 10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된 자는 코로나 회복증명서로 대체 가능

**⑦4 에콰도르**

- ▶ 2022.10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⑦5 러시아**

- ▶ 2022.10.2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\* 러시아 일부 지역(우크라이나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

**⑦6 스페인**

- ▶ 2022.10.21.부터 한국발 스페인 입국자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- ▶ 2022.12.1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⑦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**

- ▶ 2022.9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⑦8 바베이도스**

- ▶ 2022.9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⑦9 몰타**

- ▶ 2022.7.2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- ▶ 2023.1.9.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항원검사(입국전 48시간 이내 실시)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\* 만 11세 미만 아동은 위 사항 적용 제외

**⑧0 몰도바**

- ▶ 2022.4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1 페루**

- ▶ 2022.10.2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2 북마케도니아**

- ▶ 2022.4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3 모나코**

- ▶ 2022.8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4 앤티가바부다**

- ▶ 2022.8.2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5 에스와티니**

- ▶ 2022.11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6 아랍에미리트**

- ▶ 2022.11.1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7 세네갈**

- ▶ 2022.11.1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8 에티오피아**

- ▶ 2022.10.2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⑧9 튜니지**

- ▶ 2022.12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0 감비아**

- ▶ 2022.12.1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1 라오스**

- ▶ 2022.12.2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2 스리랑카**

- ▶ 2022.12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\* 다만, 일부 항공사 및 경유 국가 이용 시 PCR 결과지를 요구 할 수 있음.

\*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또는 관광객은 병원/호텔/거주지에서 7일간 격리

**⑨3 부룬디**

- ▶ 2023.1.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4 리투아니아**

- ▶ 2022.5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5 엘살바도르**

- ▶ 2021.11.1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6 리히텐슈타인**

▶ 2022.5.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⑨ 베트남**

▶ 2022.5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⑩ 아프가니스탄**

▶ 2022.5.1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.

**⑪ 탄자니아**

▶ 2023.1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⑫ 싱가포르**

▶ 2023.2.1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⑬ 타지키스탄**

▶ 2023.2.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⑭ 피지**

▶ 2023.2.1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⑮ 오스트리아**

▶ 2022.5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⑯ 잠비아**

▶ 2023.3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**⑰ 적도기니**

▶ 2023.3.2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⑲ 우간다**

▶ 2023.3.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⑳ 홍콩**

▶ 2023.4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㉑ 미카오**

▶ 2023.4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㉒ 모잠비크**

▶ 2023.4.1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㉓ 퉴가**

▶ 2023.3.3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㉔ 벨리즈**

▶ 2023.4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㉕ 코트디부아르**

▶ 2023.4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㉖ 일본**

▶ 2023.4.2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㉗ 칠레**

▶ 2023.5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㉘ 짐바브웨**

▶ 2023.5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㉙ 케냐**

▶ 2023.5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㉚ 미국**

▶ 2023.5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㉛ 기니**

▶ 2023.5.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㉜ 말리**

▶ 2023.3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㉝ 기니비사우**

▶ 2023.5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㉞ 라이베리아**

▶ 2023.5.1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⑫ 가나**

▶ 2023.5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⑬ 바하마**

▶ 2022.9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⑭ 방글라데시**

▶ 2023.5.2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⑮ 콜롬비아**

▶ 2023.4.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⑯ 카타르**

▶ 2023.4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⑰ 이스라엘**

▶ 2023.5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서류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, 여행자 보험증서) 제시 불요.

**⑱ 말라위**

▶ 2023.6.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**⑲ 인도네시아**

▶ 2023.6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 끝.